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재난방재조직 보강과 혁신분권 전담부서 변동에 따라 실·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건설교통국 ⇒ 건설방재국
- 분장사무 조정
 -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등에 관한 사항(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
 -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자치행정국⇒기획관리실)
 - 민방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건설방재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제5조중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한다.

제6조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제7조중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2호를 삭제한다.

10.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등에 관한 사항

11.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6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7호 내지 13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방위에 관한 사항

부칙(조례 제2819호, 2004. 10. 1) 제2조중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을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자치행정국장

②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안전관리담당”을 “총괄담당”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30조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세무회계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를 세정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5호 내지 제7호를 회계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분야별 란의 “안전관리과”를 “민방위안전관리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농정국, 문화관광국, <u>건설교통국</u>, 소방본부를 둔다.</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건설방재국.....</p>
<p>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p>	<p>제6조(기획관리실)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p>
<p>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제7조(자치행정국) 1. ~ 9. (현행과 같음) 10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1.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p>
<p>제12조(<u>건설교통국</u>) <u>건설교통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략) 6.~ 12. (생략)</p>	<p>제12조(<u>건설방재국</u>) <u>건설방재국장</u>..... 1.~ 5. (현행과 같음) 6. 민방위에 관한 사항 7.~ 1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2819호)</p> <p>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u>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u>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2819호)</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기구) <u>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u>..... </p>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p> <p>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1. 총무담당·민방위담당간사 : <u>자치행정국장</u></p> <p>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관</p>	<p>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u>자치행정국장</u></p> <p>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관</p>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회의 당연직위원(5인)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u>건설교통국장</u>으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의 당연직위원(5인)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u>건설방재국장</u>으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회계공무원) ① (생략)</p> <p>②기금운용관은 <u>건설교통국장</u>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u>안전관리과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안전관리담당</u>으로 한다.</p>	<p>제5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기금운용관은 <u>건설방재국장</u>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u>재난관리과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총괄담당</u>으로 한다.</p>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생략) ②위원장은 <u>건설교통국장</u>이 된다. ③~⑦ (생략)</p>	<p>제12조(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u>건설방재국장</u>이 된다. ③~⑦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u>건설교통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③ (생략)</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u>건설방재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교통국장</u>이 된다. ③ (생략) 1. ~ 5.(생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방재국장</u>이 된다. ③ (생략) 1. ~ 5.(생략)</p>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p>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략).</p> <p>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세무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세무회계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p>

□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p>제9조(구성 등) ① (생략)</p> <p>②당연직위원은 경제통상국장·농정국장·건설교통국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혁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③~④ (생략)</p>	<p>제9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당연직위원은 경제통상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혁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별표1]

현				개			
분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세 무 회계과	1~4	(생 략)		세정과	1~4	(현행과 같음)	
세 무 회계과	5~7	(생 략)		회계과	1~3	(현행과 같음)	
안 전 관리과		(생 략)		민 방 위 안전관리과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실·국·본부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